

## 특수건강진단 지침 개정안(2024. 3. 15)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5.8.1 폐활량 측정 지침</p> <p>1. 폐활량 검사의 인력 및 시설 관리 다. 폐활량 검사 장비(모델명 : CPFS/D ) 사용 설명 및 사용자 안전 지침</p> <p>2. 폐활량 검사 장비의 사용 방법</p> <p>4. 장비의 보정 방법 및 【표 1】 폐활량 검사기 보정 기록지</p> <p>6. 환경 및 감염관리 소독 방법 【표 2】 폐활량 검사기 소독의뢰 대장</p> <p>9. 폐활량 측정 사전 조사 【표 3】 폐활량 측정 문진표</p> <p>10. 폐활량 측정의 적합성 및 재현성 가. 적합성의 판단 기준</p>	<p>5.8.1 폐활량 측정 지침 개정</p> <p>1. 폐활량 검사의 인력 및 시설 관리 다. 폐활량 검사 장비(모델명 : MicroQuark Special ) 사용 설명 및 사용자 안전 지침 전면 개정</p> <p>2. 폐활량 검사 장비의 사용 방법 전면 개정</p> <p>4. 장비의 보정 방법 및 【표 1】 폐활량 검사기 보정 기록지 개정</p> <p>6. 환경 및 감염관리 소독 방법 개정 및 【표 2】 폐활량 검사기 소독의뢰 대장 개정</p> <p>9. 폐활량 측정 사전 조사 【표 3】 폐활량 측정 문진표 개정</p> <p>10. 폐활량 측정의 적합성 및 재현성 가. 적합성의 판단 기준</p>	<p>1. 폐활량 검사 장비(모델명 : CPFS/D ) 단종되어 신규 장비(모델명 : MicroQuark Special )등록 및 사용으로 폐활량 측정 지침서 개정합니다.</p> <p>2. 특수건강검진 폐활량 측정 정도관리 평가 항목 중 적합성 판단 기준에 호기 시간 6초 이상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호기 시간의 오류 부분 내용 추가 합니다.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3) 호기 시간의 오류</p> <p>가) 용적-시간곡선 상에 6초 이상 공기를 불어냈으나 고평부에 도달하지 못함</p> <p>나) 용적-시간곡선 상에 6초 이하 불어냈으나 고평부에 도달하지 못함</p> <p>다) 검사 대상자가 호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</p>	<p>3) 호기 시간의 오류</p> <p>추가 내용 :</p> <p>호기 시간이 6초가 되지 않아도 조기 중단 없이 호기 하였고 평탄부가 1초 이상 되었다면 적합한 검사로 판단한다.</p>	